

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7일	
•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					
① 건축주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
	전자우편 송달동의	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.			
		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			
		건축주 (서명 또는 인)			
전자우편 주소		@			
② 공사 개요	대지위치				
	지역지구		층 수	지하 지상	
	대지면적	m²	건축면적	m²	
	건축연면적		구 조		
	용 도		건축허가일 /허가번호		
③ 설계자	성명 (서명 또는 인)		자격번호	협회 회원번호	
	사무소 명		신고번호		
	사무소 주소 (전화번호 :)				
④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제외 사유	[]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(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) 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				
	[]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(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)가 설계한 건축물				
	[]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				
「건축법」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권자가 지정하 는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 제외를 신청합니다.					
건축주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					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
첨부서류	1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했음을 증 명하는 서류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.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가. 설계공모 방법 나.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다. 설계지침서 라.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마.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				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